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3일, 이철규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9.10.) 상정

제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5.11.19.)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3.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철규의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통한 자원 무기화, 전기차·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따른 핵심 광물 수요 급증 등 전세계 에너지·자원시장의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핵심광물’을 정의하면서 ‘광물’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 즉, 리튬, 니켈 등이 탄산리튬, 황화니켈 등 화합물 형태로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판매되고 있는 광산물을 핵심광물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출입 정보 등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협력사업·연구개발사업·인력양성 및 교육·홍보사업 관련 변화하는 에너지·자원시장에 선제

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핵심광물의 범위 확대

개정안은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 외에 광산물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현행법 제2조1)는 “핵심자원”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다. 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의 소재·부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부품

2. ~ 10. (생략)

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²⁾, ② 핵심광물, ③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부품³⁾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핵심광물”을 「광업법」 제3조제1호⁴⁾에 따른 광물 중 가목(석유, 석탄, 우라늄) 외의 광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⁵⁾로 정의하고 있음.

2)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55호)

제2조(핵심자원의 정의) 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이란 메탄올,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을 말한다.

3)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55호) 별표 2

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의 범위(제2조제3항 관련)

- 태양광 설비의 태양전지 및 그 하위 구성품목(웨이퍼, 금속화 페이스트)
- 태양광 설비의 모듈 및 그 하위 구성품목(EVA/POE, 저철분 유리, 백시트, 프레임)
- 풍력 설비의 너셀 및 그 하위 구성품목(기어박스, 발전기, 컨트롤러, 메인 샤프트, 요 베어링, 피치 베어링, 메인 베어링, 블레이드)
- 풍력 설비의 타워 및 그 하위 구성품목(후판, 플랜지)
- 풍력 설비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및 그 하위 구성품목(트랜지션피스, 후판, 강관)
- 풍력 설비의 해상풍력 전력 케이블 및 그 하위 구성품목(금속 합금 연선, 절연체, 보강체, 광 케이블, 보호체)

4) 「광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물”이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磷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홍주석[홍주석·규선석(硅線石) 및 남정석(藍晶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규회석(硅灰石)을 포함한다], 사금(砂金),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넘,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鑛滓: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2. ~ 4. (생략)

5)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55호) 별표 1

핵심광물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그런데 리튬, 니켈 등의 경우 탄산리튬, 황화니켈, 니켈괴 등 화합물이나 금속의 형태로 수입·유통되고 있으므로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산물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 외에 광산물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리튬, 니켈 등 전략광종이 화합물 또는 금속의 형태로 유통·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광물”은 자연상태에서 무기적으로 생성된 균질한 고체로 일정한 화학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적으로 원자가 결합한 물질이고,

“광산물”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광물 또는 광석으로부터 채굴, 선광, 제련, 가공 등의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로, 광석, 정광, 화합물, 금속 등이 이에 해당함⁶⁾.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업계는 광물뿐만 아니라 그 가공품인 화합물, 금속에 이르기까지 전략광종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리튬광, 니켈광, 코발트광, 망간광, 흑연, 희토류광[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터븀), 세륨, 란타넘(란탄), 이트륨, 스칸듐에 한함], 니오비움광(니오븀), 동광(구리), 보크사이트(알루미늄에 한함), 규석·규사(규소에 한함), 마그네사이트(마그네슘에 한함), 몰리브덴광, 바나듐광, 백금광(백금, 팔라듐, 루테튬, 로듐, 이리듐에 한함), 주석광, 티탄철광(티타늄에 한함), 텅스텐광, 안티몬광(안티모니), 창연광(비스무스), 크롬철광(크롬에 한함), 연광, 아연광, 탄탈륨광, 지르코늄광, 갈륨, 인듐, 셀레늄, 스트론튬

6) 광산물 구분은 참고자료 1 참조

인 관리를 위해 핵심광물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근거 마련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수출량·수입량·가격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현행법⁷⁾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핵심자원의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등에 대하여 핵심자원의 수출량·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핵심자원의 가격
2. 핵심자원의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전망 및 수출량·수입량
3. 핵심자원을 활용한 소재·부품·제품의 재고, 수급 현황과 전망
4. 핵심자원의 공급원, 공급기반시설 및 공급위험요인
5. 핵심자원의 국내 매장량 및 광산 현황
6. 핵심자원의 해외 공급망 관련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 공급업체의 핵심자원 재고, 수급 현황과 전망, 공급원, 공급기반시설 및 공급위험요인(해당 공급기관 또는 수요기관에 대한 공급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과 관련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자원안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16조⁸⁾는 세관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기

8)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법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라. 그 밖에 급부·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 ⑧ (생략)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핵심자원 수출입 내역과 관련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수출량·수입량·가격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핵심자원의 수출입 내역과 관련한 자원안보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자원안보 현황 진단 및 자원안보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자원의 공급망 현황,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등에 대한 정밀분석을 위해 과세정보 공유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과세정보는 사생활 비밀보호 및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보장 등을 위해 과세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세정보 제공은 별도 법률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공공 목적이 큰 경우에 한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관세청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인 수출입 정보 수집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⁹⁾에 근거하여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별도로 입법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8조제2항제2호는 요청 대상 정보에 핵심자원의 수출량·수입량 외에 “핵심자원의 가격”을 추가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8조제2항제1호는 이미 “핵심자원의 가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자구를 “핵심자원의 수출입가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공급망 위기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과세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정보 처리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입업자·수출업자별, 국가별 수출입량
2. 경제안보품목의 수출입가격(변동내역을 포함한다) 및 과세내역

② 관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 관련 추진 업무의 위임근거 마련

개정안은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와 관련하여 법률에 명시된 업무 외의 추진 업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현행법 제36조¹⁰⁾는 정부가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정보교환, 공동 정책 조사·연구, 공동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 제37조¹¹⁾는 정부가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기술의 개발과

1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6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2. 자원안보 관련 해외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정보교환
3. 자원안보 관련 공동 정책 조사·연구 등 국제협력
4. 자원안보 관련 공동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국제협력
5.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7조(연구개발)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와 관련된 정책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시행
2.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 수요조사 및 관련 동향분석
3.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4.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원안보와 관련된 정책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시행, 기술 수요조사 및 관련 동향분석,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 제38조¹²⁾는 정부가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대국민 홍보활동 및 교육,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와 관련하여 법률에 명시된 업무 외의 추진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원안보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의 세부적인 집행방향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① 현행법 제36조제1항제5호·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38조제1항제3호는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홍보)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자원안보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및 교육
3.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의 위임 없이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한 업무 외의 기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 ② 일반적인 입법례는 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 추진 업무를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핵심자원의 수출입가격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과세정보 등의 범위 및 대상, 비식별화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자원의 수출입가격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시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화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2항제2호·제8조제5항).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나목 중 “광물로서”를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제2호 중 “가격”을 “수출입가격”으로, “과세정보로서 품목별, 수입업자·수출업자별, 국가별 수출입량 및 수출입가격 등 수출입 내역에 관한 정보를”을 “과세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의 요청”을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으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을 “비식별화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 ----- ----- ----- ----- -----.	1. ----- -----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광업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	나. ----- ----- ----- <u>광물로서</u> ----- ----- <u>고시하</u> 는 광물 및 그	나. ----- ----- ----- <u>광물</u> <u>및 그 광산물</u> <u>로서</u> ----- ----- <u>고시하</u> 는 광물 및 그

[illegible]

물량, 재고, 수급 현황·전망 및 수 출량·수입량	----- ----- -----수입량·가 격(「관세법」 제 116조제1항에 따 른 과세정보로서 품목별, 수입업자 ·수출업자별, 국 가별 수출입량 및 수출입가격 등 수출입 내역 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 ----- -----수입량·수 출입가격(「관세 법」 제116조제1 항에 따른 과세정 보를 포함한다)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 음)	3. ~ 7. (개정안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 음)	③·④ (개정안과 같음)
⑤ 그 밖에 통합정 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u>정보의 요청</u> 및 <u>관리에 필요한</u> <u>사항은</u>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⑤ ----- ----- ---<u>요청하는 정보</u> <u>의 범위, 대상</u>--- <u>비식별화에 대해서</u> <u>는</u>----- -----.
제36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제36조(국제협력) ① ----- -----	제36조(국제협력) ① ----- -----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제37조(연구개발)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연구개발)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 ----- -----. 1. ~ 4. (개정안과 같음) 5. ----- ----- ----- <u>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개정안과 같음) 제37조(연구개발) ①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 ----- ----- -----<u>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	--	---

② (생 략)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홍보) ① 정 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자원안 보 관련 전문인력 의 양성 및 교육 ·홍보 등에 필요 한 <u>사항</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홍보) ① --- ----- ----- ----- ----- ----- -----. 1.·2. (현행과 같 음) 3. ----- ----- ----- <u>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홍보) ① --- ----- ----- ----- ----- ----- -----. 1.·2. (개정안과 같 음) 3. ----- ----- ----- <u>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개정안과 같음)
---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광물로서”를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로, “고시하는 광물”을 “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수입량”을 “수입량·가격(「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품목별, 수입업자·수출업자별, 국가별 수출입량 및 수출입가격 등 수출입 내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

항제4호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u>광물로서</u>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u>고시하는</u> 광물 (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나. ----- ----- <u>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u> ----- ----- <u>고시하는</u> <u>광물 및 그 광산물</u> -----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2. ~ 10. (생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	② ----- ----- ----- -----

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핵심자원의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전망 및 수출량·수입량

3. ~ 7. (생략)
- ③·④ (생략)
-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자원 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1. (현행과 같음)
2. -----

수입량·가격(「관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포함한다)

3. ~ 7. (현행과 같음)
- ③·④ (현행과 같음)
- ⑤ -----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비식별화에 대해 서는-----.

제36조(국제협력)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제37조(연구개발) ① 정부는 자원 안보에 필요한 정책·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u>사항</u>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연구개발)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사항</u>
② (생 략)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홍보)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 다. 1.·2. (생 략) 3.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u>사항</u>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홍보)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 ----- -----<u>사항으로서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